2008년 하반기부터

달라지는 주요 산림 시책



’0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시책

구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 관계 부서
□ 산지이용 규제완화	o 보전산지 편입비율 : 50% ~ **75%**	o 보전산지 편입비율 확대 : **시·군별 보전산지 면적비율**	산지관리법 시행령·규칙 (’08.7월)
	o 관광·휴양시설은 보전산지 편입비율 적용	o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산지 편입면적 **30ha 미만의 관광·휴양시설**은 보전산지 편입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	
	o 임업용산지 안에서 허용되는 임산물 재배 품목 - 산채 등 **27개 품목**	o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임업용산지 안에서 허용되는 임산물 재배 품목 확대 - 복분자 등 **57개 품목**(30개 품목 추가)	
	o 산지전용 허가예정지와 종전의 산지전용지가 직선거리 **500m**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예정지와 기존 전용지의 합산 면적이 3ha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연접개발 제한	o 연접제한시 적용되던 면적합산 기준거리를 **250m**로 대폭 축소 o 자기소유산지에 실거주목적의 660㎡ 미만의 단독주택,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해서는 **연접개발 제한 제외**	산림청 산지제도과 (042-481-4141)
	o 200ha 미만은 시·도지사, **200ha 이상은 산림청장**이 산지전용허가	o 개발수요가 많은 도시지역·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**면적에 관계없이 시·도지사**가 산지전용허가	
	o ‘계획상도로’를 이용한 **산지전용허가 불인정**	o 산지전용 허가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진입로개설을 의무화 하지 않고 기 허가된 **‘계획상 도로’의 공동사용 허용**	
	o 토석채취 허가권한 - 시·도지사 : **7~10ha** - 시장·군수·구청장 : **7ha 미만**	o 토석채취 허가권한 위임 확대 - 시·도지사 : **10~20ha** - 시장·군수·구청장 : **10ha 미만**	
	o 산지전용시 산지경관 심의와 자연경관 심의를 별도 심의	o 산지경관 심의를 자연경관 심의로 통합·운영하여 기업의 중복적 경관심의 부담을 완화	(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)

구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 관계 부서
□ **국유림 이용 활성화**	o 각종 개발사업 요존국유림 편입기준 - 개발촉진지역 내의 사업 : 사업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**30% 미만**으로서 **30ha 미만** - 일반개발사업 : 사업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**20% 미만**으로서 **10ha 미만**	o 각종 개발사업시 요존국유림 편입비율 확대 - 개발촉진지역 내의 사업 : 사업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**40% 미만**으로서 **50ha 미만** - 일반개발사업 : 사업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**40% 미만**으로서 **20ha 미만**	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·규칙 ('08.7월)
	o 공동산림사업 수행주체 및 사업범위 - 사업주체 ·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**재단법인** < 신 설 > < 신 설 > -사업범위 : 산림소득사업, 산림휴양시설, 산림연구사업 등	o 투자여건 개선 및 공동산림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체 및 사업범위 확대 - 사업주체 ·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**법인** -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자본금이나 기본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해당 자본금이나 기본재산의 3분의 1 이상을 재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· **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산림·환경관련 국제기구** 추가 - 사업범위에 **수목장림**, **도시숲**, **신재생에너지** 설비, **산림레포츠 시설, 산림관광·레저**사업 등을 **추가**	산림청 국유림관리과 (042-481-4091)
	< 신 설 >	o 요존국유림 **사용허가 대상 확대** -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공공단체·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까지 사용허가 대상 확대	
	o 국유림과 공·사유림 교환조건 - 교환하는 재산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**4분의 3 이상**	o 국유림과 공·사유림 교환조건 완화 - 국유림 확대 집단화, 지자체 공용·공공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환하는 재산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**2분의 1 이상** 일때도 교환 가능	
□ **한국등산지원센터 설립·운영**	< 신 설 >	o 등산로 등 산림자원의 보호와 건전한 등산문화 확산 및 국민 등산활동 지원을 위해 **등산지원센터를 설립**하여 운영	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('08.6.22) 산림청 휴양등산과 (042-481-4106)

구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 관계 부서
□ **입목벌채·굴취제도 개선**	o 입목의 벌채는 수종별 **기준벌기령이 지나야 벌채 가능**	o 벌채 가능년수 이전이라도 생장이 빠른 나무는 벌채 허용 - **가슴높이 지름 30cm 이상인 나무가 50% 이상인 경우**	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'08.6.22)
	o 재해의 예방·복구, 농가 건축 및 수리, 농업·임업·축산업·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임의 입목 벌채 범위 - 산주 : **5㎥** - 독림가·후계자 : **50㎥**	o 산주의 소득증대 및 국산재 이용 촉진을 위해 임의로 입목 벌채할 수 있는 범위 확대 - 산주 : **10㎥** - 독림가·후계자 : **80㎥**	
	o 지목이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㎡ 미만인 **과수원**의 입목인 경우 **신고**로 굴취·채취	o 지목이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㎡ 미만인 **과수원**의 입목인 경우 **임의**로 굴취·채취	산림청 목재소득과 (042-481-4204)
	o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구비서류 - **벌채구역도**	o 민인의 편의를 위해 입목벌채 허가서류 완화 - **벌채구역도 또는 GPS장비를 이용한 실측도**	
	o 입목벌채 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 산림경영계획과 **2할 이상** 차이가 날 경우 변경허가	o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시업촉진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해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시업신고 수량변경 대상 변동률을 **3할 이상**으로 상향조정	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'08.6.22) 산림청 산림경영지원과 (042-481-4195)

구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 관계 부서
□ **산림경영 기술자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**	o 숲가꾸기 분야의 책임기술자 감리원 배치 기준 - **산림경영기술자 자격 취득후** 해당분야 실무경력만 인정	o 숲가꾸기 분야의 책임기술자 감리원의 실무경력 확대 - 1급 산림경영기술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**산림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** 해당분야 실무경력으로 확대 - 2급 산림경영기술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**산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** 해당분야 실무경력 인정	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·시행규칙 ('08.6.22) 산림청 자원육성과 (042-481-4218)
□ **산림사업법인의 등록·관리**	o 산림사업법인의 등록·관리업무를 **산림청장이 관장**	o 산림사업법인의 등록·관리업무를 **시·도지사에게 위임**	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('08.6.22)
	o 산림사업법인의 종류 - 자연휴양림 조성 **<신 설>**	o 산림사업법인 종류를 세분화 - 자연휴양림 조성 및 **산촌생태마을 조성** - **도시림 등 조성**	산림청 산림경영지원과 (042-481-4195)
□ **도시림 대상 지역 조정**	o 도시림 현황통계 및 실태조사시 조사대상을 시의 **'면'지역**까지 포함	o 모든 **'읍' 이상**의 지역으로 변경 ('면'지역은 제외)	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('08.6.22)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(042-481-4224)
□ **녹색사업단 운영**	o **녹색자금관리단**	o 명칭을 '**녹색사업단**'으로 개칭하고, 녹색자금 사용용도에 해외산림자원 확보와 해외산림기능 증진사업을 추가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강화	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('08.6.22) 산림청 산림정책과 (042-481-4131)

※ 관련 법령이 개정 중에 있는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.



httP://www.forest.go.kr